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29
----------	-----------

제안년월일 : 2023년 4월 21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어린이집의 폐지 및 휴지 수리의 인가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의 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관할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 시장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의5)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의5 중 “경우에는”을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으로 하고, “관할 구청정과 협력하여야 한다”를 “협력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신 설></p>	<p>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u>관할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 ----- ----- <u>경우</u> <u>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u> ----- ----- ----- <u>협력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의5(어린이집의 폐지 등에 따른 조치) 시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관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영유아의 보육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다.</u></p>